

산업보건단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 이 세 훈 >

(지난호에서 계속)

다. 업무상 상해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나 상해의 진단과 치료는 가능한 한 신속해야 함은 물론이고 의료인 보건사업을 통해 완전한 기능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상해나 질병의 발생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ㄱ. 화학적 유해인자들

병원종사자들에게 피폭될 수 있는 독성화학물질은 여러가지가 있다. 폭로경위로는 화학물질을 엮지르는 사고를 비롯하여 불량한 환기, 화재, 정상업무중 등을 들 수 있다. 건강장애로는 경미한 피부자극, 발암, 변이유발, 기형발생 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임상중독학, 적절한 위생감시, 환경관리방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인들에게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해주어야 하고 건강장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한다. 의료인들의 건강장애요인에 관한 지식이나 안전관리습관이 직업병 예방에 필수적이므로 각 병원에서는 이 점

이 해결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응급조치의 대비와 안전관리기구도 필요하다.

ㄴ. 마취제

저농도의 마취제에 직업적으로 폭로될 때 야기되는 건강장애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중 가장 널리 연구된 장애는 생식기 계통의 독성인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마취제에 폭로된 여성이나 혹은 근로자의 아내들은 자연유산의 위험도가 증가됨이 밝혀졌다. 그밖의 독성으로는 지각력, 인지 및 운동기능장애를 들 수 있다.

관리대책으로는 마취제를 그 냄새로서 감지하여 관리하려 하지 말 것, 마취환자의 호기를 환기되지 않는 방에 배출시키지 말 것, 국소배기시설, 공기감시기구, 피폭계 (passive dosimeter) 착용 등이 있다.

ㄷ. 석면

특히 오래된 병원건물의 경우 석면폭로는 비교적 흔하다. 석면폭로와 폐암과의 관련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작업자가 석면에 폭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적절한 환경분석, 환경기준에 의거한 환경관리 및 작업자의 보호가 중요하다.

ㄹ. 항암제

대개의 항암제들은 발암, 변이유발, 기형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태아는 감수성이 있다. 직업적으로 항암제에 폭로된 간호원과 태아손모와의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예도 있다. 환기가 잘 안되는 병원내에서는 항암제가 검출된다고 하며 약제실 근무자나 항암제폭로 간호원에서 자매염색체교환 (SCE), 염색체잡, 요중 변이물질 등이 증가되었다. 각 병원에서는 항암제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설정한 미국립보건원 (NIH)의 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ㅁ.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은 열에 약한 물질을 소독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알킬화 물질이다. 급만성폭로시에는 호흡기자극, 여러가지 중추신경계장애, 소화기장애, 화상이 생길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

지만 백혈병 증가, SCE, 자연유산의 증가를 보고한 예도 있다. 강력한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용농도는 1 ppm으로 낮추었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 폭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ㄴ. 포름알데히드

부검실, 외과적 병리검사실, 신장투석실에서 흔히 폭로가 발생된다. 폭로시에는 피부, 눈, 코, 인후, 폐를 자극하고 면역학적 반응으로 피부염과 천식이 발생된다. 작업시의 안전관리, 환기, 정기적인 공기시료채취를 통해 직업성폭로를 줄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보호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ㄷ. 수 은

조직검사실에서 수은을 엮지른다든지, 의료기구를 수선할 때 폭로될 수 있다. 떨림, 운동실조, 언어장애, 정신 및 정서변화 등의 중추신경장애가 초래되므로 교육, 환경관리, 응급처치 등을 통해 이러한 수은중독을 예방해야만 한다.

ㅇ. 물리적 유해인자들

병원안전관리위원회의 긴밀한 협조하에 병원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안전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보건사업은 의학적 감시활동, 환경관리, 재해보고, 건강증진 및 안전한 업무수행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병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물리적 유해인자는 전기사고, 넘어지는 것, 과열, 불량한 조명, 불량한 환기, 레이저 및 X-선 같은 의료기구사용 등이다. 주사바늘에 찔리는 것은 가장 흔한 상해이다. 따라서 사용시 주의사항과 버릴 때의 주의점 등을 잘 교육해야 한다. 찔린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나 상해 예방이 더 중요하다.

요부손상은 업무상 장애로 인한 결근의 주된 요인에 속하며 간호원, 간호보조원, 청소부, 검사실요원 등은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환자를 들거나 옮길 때 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상해를 줄이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좋다.

ㄹ. 방사선

방사선 취급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라. 환경관리

“인지되는 유해인자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라는 OSHA의 요구에 따라 산업보건의, 산업보건간호원, 안전관리자 및 산업위생사의 협조하에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업보건요원은 정기적으로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 즉 의료인은 여러가지 유해인자에 폭로되므로 이들 유해인자를 동정하고 질적양적평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마. 보건교육

모든 의료인에게 건강, 안전 및 환경정보에 관한 교육은 제공해야 한다. 그 내용은 안전한 업무수행, 건강에 관한 정보, 질병이나 상해의 보고 등이며 특히 가임여성에 대한 유해인자폭로 및 그 장애에 관한 정보교육 및 상담은 중요하다. 채용시 및 정기건강평가는 건강 및 안전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바. 남 용

행동장애나 업무수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술, 중추신경억제제 및 흥분제, 마취제 등의 남용자나 중독자는 근무금지 시키고 의학적 평가를 받게 하여 산업보건의로 하여금 임상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시켜야 한다. 약물 혹은 알콜중독이 판명되면 산업보건의에 의한 최종판정이 정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병원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사. 기 타

그밖에 본 지침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스트레스의 관리, 건강 및 안전관리의 기록과 그 평가 및 보존, 의료인 개인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와의 협조, 그리고 산업보건사업의 주기적인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끝).